

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명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
발 의 자 : 이명희, 강구덕, 김제리, 김진수,
남창진, 문영민, 박마루, 이복근,
이순자, 이혜경, 송재형, 장인홍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본 조례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잘못된 인용조항을 바로 잡고, 안정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급식 단체를 포함하는 등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공공급식관련 용어 및 정의가 명확하도록 수정함(안 제1조, 제2조).
- 나. 다양한 급식 관련 단체를 포함함(안 제3조).
- 다. 인용조항의 오류를 수정함(안 제6조, 제12조, 제18조).
- 라. 조·항·목의 순서를 바로잡고, 불필요한 약어를 삭제함(안 제2조, 제3조, 제17조).
- 마.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선출 방법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법을 추가함(안 제16조).
- 바. 구청장의 권한 침해 부분을 삭제함(안 제17조, 제18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아동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
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지역농산물 이
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”를 “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구매·소비하는 단체급식”을 “이루어지는 급식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2호 중 “상생교류”를 “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”로 하며, “농림수산물”을 “농·수·축산물(이하 “농수산물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우수 식재료”를 “우수한 식재료”로 하고, “농·수·축산물(이하 “농수산물”이라 한다)”을 “농수산물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제5호, 제6호,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, 제7호, 제8호 및 제9

호로 하고, 제7호(중전의 제6호) 중 “유관기관”을 “생산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”으로 하고, 제8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먹거리”를 “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”로 하며, 제9호(중전의 제8호) 중 “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

제3조제2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장(이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우수”를 “우수한”으로 하고, “급식”을 “공공급식”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2항 중 “도·농간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하여”를

“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”으로 하고, “경비”를 “경비에 대해 일부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11조”를 “제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우수”를 “우수한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1조제4항제5호 중 “추천한 학부모”를 “추천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제13조제4항”을 “제1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제3항(중전의 제2항)제5호 중 “도·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”을 “도농상생을 실현하는”으로 하고,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시장 및 구청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구청장 및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제21조”를 “제17조”로 한다.

제19조를 삭제하고,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비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.

2. “상생교류”란 서울과 지역, 도시와 농어촌(이하 “도·농간”이라 한다)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, 체험, 문화·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,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.

3. “우수 식재료”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·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,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「식품위생법」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·수·축산물(이하 “농수산물”이라 한다)과 그 원료로 제조·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~ 라. (생략)

바.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농수산물

4. ~ 5. (생략)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

1. ~ 4. (생략)

< 신 설 >

5. 도·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방안

6.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

7. 떡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·홍보, 체험·교류프로그램 운영

어지는 급식을 말한다.

2. “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” --

----농·수·축산물(이하 “농수산물”이라 한다) -----

3. “우수한 식재료” -----

---- 농수산물 -----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-----

4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

6. 도·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방안

7.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

8.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떡거리에--

8.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(이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,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에 보고한다.

③ (생략)

제5조(지원 내용) ① 시장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도·농간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하여 공공급식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~ ④ (생략)

제6조(지원방법 및 규모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.

③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, 부

9. 그 밖에 시장이 -----

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원 내용) ① --- 우수한 식재료 ----- 공공급식 -----

② -----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----- 경비에 대해 일부를-----.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지원방법 및 규모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9조에 -----

③ ----- 우수한 식재료를 -----

제11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

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(생략)

④ (생략)

1. ~ 4. (생략)

5.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

6. ~ 8. (생략)

⑤ (생략)

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16조(분과위원회)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< 신설 >

제4장 공공급식센터의 설치·운영

제17조(공공급식센터의 설치) ① (생략)

< 신설 >

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, 공공성

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 추천한 사람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제11조제4항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

②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장 공공급식센터의 설치·운영

제17조(공공급식센터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-----

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도·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지원

6.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

③ 시장 및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생산 농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등 도·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공공급식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8조(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) 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1. ~ 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9조(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)
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도농상생을 실현하는 -----

6. -----

④ 시장은 -----

----- 위하여 구청장 및 -----
-----.

⑤ -----

-----.

제18조(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) ① 제17조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< 삭제 >

제5장 보칙

제20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

① ~ ② (생략)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

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9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

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시행규칙) -----

-----.